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170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의 사무로 이관되어 광고물등 관리법, 같은법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안 제2조)
- 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안 제3조 내지 제6조)
- 다. 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9조)
- 라. 옥외광고업의 신고(안 제12조)
- 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1부 【도 새마을 13670-10001,
(2002. 1. 2)】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 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육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영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도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광고물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3.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4. 1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고물심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제8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고물 등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계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체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4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④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4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게 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숫점이하 2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 편의를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제16조(과태료의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이 행정처벌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부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 10 -

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3조 관련)

종 류	교育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 교육	별도 정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 12 -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15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이용 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제곱미터이하 • 3.5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이하 · 1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이하 · 10개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 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 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14 -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 2,000
7. 흥보탑 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이하 ·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이하 · 10개초과시 5개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지 않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5조와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6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6 -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5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기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 0.5제곱미터이하 - 0.6~0.8 제곱미터이하 - 0.9~1.0 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 1.0~1.3제곱미터이하 - 1.4~1.6제곱미터이하 - 1.7~2.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 2.0~2.3제곱미터이하 - 2.4~2.6제곱미터이하 - 2.7~3.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 5만원이상 20만원미만 ·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 40만원이상 80만원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 9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 0.5제곱미터이하 - 0.6~0.8 제곱미터이하 - 0.9~1.0 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 1.0~1.3제곱미터이하 - 1.4~1.6제곱미터이하 - 1.7~2.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 2.0~2.3제곱미터이하 - 2.4~2.6제곱미터이하 - 2.7~3.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5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 4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 1.0제곱미터이하 - 1.1~2.0제곱미터이하 - 2.1~3.0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3.0~3.7제곱미터이하 - 3.8~4.4제곱미터이하 - 4.5~5.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5.0~6.0제곱미터이하 - 6.1~8.0제곱미터이하 - 8.1~10.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 9만원
(2) 지주 · 지정 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 1.0제곱미터이하 - 1.1~2.0제곱미터이하 - 2.1~3.0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3.0~3.7제곱미터이하 - 3.8~4.4제곱미터이하 - 4.5~5.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5.0~6.0제곱미터이하 - 6.1~8.0제곱미터이하 - 8.1~10.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 9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 1.0제곱미터이하 - 1.1~2.0제곱미터이하 - 2.1~3.0제곱미터미만	·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3.0~3.7제곱미터이하 - 3.8~4.4제곱미터이하 - 4.5~5.0제곱미터미만	·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5.0~6.0제곱미터이하 - 6.1~8.0제곱미터이하 - 8.1~10.0제곱미터미만	·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50만원 + 9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이상 3만원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이상 3만원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이상 위반자	·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20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계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
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7조제1항과 관련)

위반사항	기준	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 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 9만원
2. 둘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라. 면적 20제곱미터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미만	200만 원 + 9만 원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30만원
- 0.5제곱미터이하		35만원
- 0.6~1.0제곱미터이하		40만원
- 1.1~2.0제곱미터이하		48만원
- 2.1~3.0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3.0~3.5제곱미터이하		55만원
- 3.6~4.0제곱미터이하		65만원
- 4.1~4.5제곱미터이하		80만원
- 4.6~5.0제곱미터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5.0~6.0제곱미터이하		110만원
- 6.1~7.0제곱미터이하		130만원
- 7.1~8.0제곱미터이하		150만원
- 8.1~9.0제곱미터이하		170만원
- 9.1~1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 산한 금액미만	200만 원 + 9만 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가. 연면적 5제곱미터미만		30만원
- 2.0제곱미터이하		35만원
- 2.1~3.0제곱미터이하		40만원
- 3.1~4.0제곱미터이하		48만원
- 4.1~5.0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5.0~6.0제곱미터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이하		75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 8.1~9.0제곱미터이하 - 9.1~10.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85만원 95만원
- 10.0~12.0제곱미터이하 - 12.1~14.0제곱미터이하 - 14.1~16.0제곱미터이하 - 16.1~18.0제곱미터이하 - 18.1~20.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20.0~25.0제곱미터이하 - 25.1~30.0제곱미터이하 - 30.1~35.0제곱미터이하 - 35.1~40.0제곱미터이하 - 40.1~45.0제곱미터이하 - 45.1~50.0제곱미터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미만	300만원 + 9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연면적 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 1m'당 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 1개당 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	·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연면적 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 1m'당 5만원

- 24 -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라.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의시설물 마. 가로 내지 라목 이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유사한 모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36만 원 + 1m'당 5만 원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	·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50만 원 150만 원 + 1m'당 1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 1m'당 10만 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 1.0제곱미터이하 - 1.1~2.0제곱미터이하 - 2.1~3.0제곱미터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3.0~4.0제곱미터이하 - 4.1~5.0제곱미터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50만원에 5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 을 가산한 금액미만	10만 원 20만 원 29만 원 35만 원 45만 원 50만 원 + 4만 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26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364mm × 257mm 보존용지 (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28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탁 기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⑩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원증	
사 진 (3.5×4.5)	
영주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주 시 장 ①

- 30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3 일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고번호	
⑦ 재교부신청사유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옥외
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⑩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 32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 g / m²

【별지 8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육과정명	③ 교육수료일자	④ 소속업소명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비고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 34 -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소			
교육계획	⑥ 일시			
	⑦ 장소			
⑧ 불참사유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신 청 인

1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신청서		30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 36 -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43조 및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12호서식】

광고물심의신청서				처리기간
				15(10)일
광고주	성명			주민(법인)등록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 내용	총수		건물높이	
건축물용도				건물지역지구
시공업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광고물의 도면 ·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